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10215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102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050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중

피고, 항소인B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변론 종결 2019. 7. 10.

판결 선고 2019. 9. 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050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943,4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사전에 방화인증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방수문을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그 방수문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로서는 제작된 방수문조차 납품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방화인증시험이 불필요한 방수문에 대하여 원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방화인증시험이 불필요한 방수문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을 5호증 15행 이하, "UL인증방화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도어는 이미 합격이 된 경우로서 납품이 가능한데, 행정절차인 원안위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아 납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분).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기간 내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기간1)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계약보증약관 제1조), 예외적으로 '실제이행기일까지' 원고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위 약관 제4조 제2항).

② 위 '실제이행기일'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행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만을 의미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당초 정하여진 이행기가 모두 종료한 후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행기 연장 요청을 거부한 상태에서 2017. 3. 14.과 2017. 4. 6.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였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상 이행기도 만료되었고 명시적으로 이행기를 연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원칙적인 보증기간과 예외적 보증기간을 모두 도과한 이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행기 내에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그 이행기가 경과한 후에 계약 해제를 할 경우에는 피고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5호), 원고가 계약상 이행기가 경과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에 기재된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약관의 의미는 이행기 내에 채무자의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이행기가 경과할 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도 그 이행기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채권자에게 지우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주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함에 따라, 주계약의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이르러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사고는 실제로 주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지는 그 '해제·해지 사유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99331 판결).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이행착수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이행기 도과 이전에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행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을 곧바로 물어 이행기 도과 이전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첨부한 '계약보증약관(갑 제6호증의 2)'은 일반 약관으로서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행기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기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이행기 도과 이후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위 약관은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라는 예외조항(제4조 제1항)을 두고 있는데, 이행기간과 보증기간이 겹침으로써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당초 약정한 이행기가 도과하였다고 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는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행기 도과 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이행기일'이 실제로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당초 이행기가 도과하고 소외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위 예외 조항을 마련한 취지인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 것은 당초 정하여진 이행기가 경과한 이후이지만, 그 당시까지는 소외 회사가 이행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명시적으로 이행기를 연장한 기간만이 '실제이행기일'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 연장된 기일 내에 또다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여전히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위 예외조항을 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다(채무이행기 이후에 채권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피고의 책임이 무한정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경청할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다른 법규나 약관 규정을 마련하거나 다른 일반적인 법 해석원리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이승한

판사천대엽

1) 보증기간은 이행기간과 동일하다. 이하에서도 같다.